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와 주요내용



강창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법학박사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배경

소비자보호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국가 정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소비자보호정책은 최근 10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다. 이 법률은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손쉽게 하는 법률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나라도

이제 이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는 물론 기업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실제 우리는 많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가스 폭발 사고, 각종 화재 사고, 자동차 사고, 어린이 장난감 사고, 식품 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고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기능을 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제품의 성질과 그 기능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무방비 상태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을 잘 만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법률인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경영자는 고객의 불만과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0여년간 관련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당초 제조물책임법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유럽식 제조물책임법(EC지침반영)을 기본모델로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유럽식 모델을 따르는 것이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안은 정부안으로 채택되었고, 수정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을 다시 수정하여, 1999년 12월에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1) 피해자 구제의 용이

제조물책임은 결함 제조물로부터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결함 제조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등을 적용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계약관계가 있는 제조물의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로는 결함 제조물을 제조한 제조업자에 대한 직접 청구 또는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수인이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

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피해의 구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결함을 요건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은 현대 산업 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손쉽게 한다.

2) 기업의 경쟁력 제고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그 입법 수준이나 내용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과 외국의 입법 경향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나 이와 관련한 전략의 선진화가 불가피하다. 선진 외국의 제조물에 대한 안전성 수준에 우리 기업은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배상제도나 위험의 예측 및 제조물의 개발 전략도 새로이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기업의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발전 특히 제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3)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소비생활과 경제 사회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영역을 어렵게 하고 기업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준다고 인식하고, 실제 그러한 부담을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물책임의 부정적인 면만을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조물책임제도는 기업이 반드시 넘어

셔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제조물책임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기업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제조물책임제도가 초기에 정착되어 국민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기업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장치를 보완 발전시키고,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한 각종 안전기준 등 행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조물 안전 관련법의 정비도 후속 과제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당사자가 큰 걱정이 없도록 보험제도 등 보상체제도 발전시켜야 한다.

3.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제1조).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다. 이 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 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피해의 사전 예방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사후 피해구제 정책의 하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2) 법적용 대상 제조물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제2조1호).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조물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식품, 가전제품, 화장품, 어린이용품, 농기구, 화학 제품, 의약품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외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3) 결함의 정의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의 유무는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요건이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자세히 결함을 정의하여 결함을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2호).

여기서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조결함은 공정상의 이물질 혼입, 설계와 달리 제조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결함에서는 제조물의 내부설계, 제조물의 형상설계, 제조물의 포장설계, 색상, 도안, 표시, 경고 등을 포함한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

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경우에도 결함이 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4) 책임 주체

또한 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책임을 진다(제2조3호).

5) 손해의 범위

제조물책임에서 손해의 범위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손해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여 일반원칙에 맡기고 있다. 실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제조물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물 자체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조물 자체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확대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이다. 법에서는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제3조제1항).

6) 면책 사유

그리고 면책의 항변 사유로 법에서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리콜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상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등 사고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7) 연대 책임

법에서는 연대책임 규정을 두고 있는 바(제5조), 이 조항은 제조물이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수 일 수가 있고 각각의 책임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입법이다.

8) 소멸 시효 등

법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법제6조). 그리고 청구권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한다(제7조).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하는 경우 등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